당진시의회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1호

2025년 제1회 당진시의회 일반임기제 공무원(정책지원관) 임용시험 공고

2025년 제1회 당진시의회 일반임기제 공무원(정책지원관)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5년 8월 5일

당진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채용분야 (근무부서)	채용직급	채용 인원	근무 기간	직 무 내 용
정책지원관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2명	2년	❍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 상세 직무내용은 붙임 직무기술서 참고

※ 2025년 9월 중 임용 예정이며, 계약기간은 근무실적평가 등을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2.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제27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55조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04조, 제106조

❍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7. 12. 31. 이전 출생자)

❍ 주소지 및 성별 : 제한 없으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단, 남자는 병역 필 또는 면제자로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시점에 근무 가능한 자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기준「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나. 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자격
정책지원관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상기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법인 등에서 예산·결산, 회계, 정책개발·분석 등 관련분야 연구·조사·분석·입법지원 등 실무경력자 *공공기관 :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 및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cleaneye.go.kr)에 공시·지정된 기관

※ 경력의 계산은 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주당 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한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전임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하고, 시간선택제 근무의 경우에는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부를 인정함

※ 소속 등을 특정할 수 없는 프리랜서와 같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책임소재가 명확한 담당자급 이상의 경력을 인정하며, 인턴 및 사무보조, 행정지원, 연구보조 등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4. 보수수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직급별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수행능력 및 경력 등에 따라 최종 결정함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고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68,388천원	**48,572천원**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심사

나. 2차 시험(논술 및 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논술 및 개별 면접을 통해 질의·판단

○ 응시분야와 관련된 주제발표, 논술 등을 병행하여 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험방법은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심사위원별 산술 평균 70점 미만)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채용예정 인원 내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불합격기준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 면접 포기자 및 면접 불참자

◈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시험공고	'25. 08. 05.(화) ~ 08. 18.(월)
원서접수	**'25. 08. 19.(화) ~ 08. 21.(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논술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	'25. 08. 26.(화)
논술 및 면접시험	'25. 08. 29.(금)
최종합격자 발표	'25. 09. 01.(월)
임용예정	'25. 9월 중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논술 및 면접시험 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당진시의회) https://council.dangjin.go.kr 접속 → 의회소식 → 고시공고

※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된 경우,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정확한 논술 및 면접시험 계획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당진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

7.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5. 8. 19.(화) ~ 8. 21.(목)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 수 처 : 당진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택배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

<등기우편 접수>

◈ 주 소 : (우 31773) 충남 당진시 시청1로 1, 당진시의회 사무국 의정팀(1층)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2025. 8. 21.(목) 18:00)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접수 후에는 반드시 담당자(☎041-350-4811)에게 유선 연락

◈ 응시분야 직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동봉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우편통상환은 금융업무로 우체국 마감시간 유의

※ 우편접수 시 기재서류 미비 등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 책임임

※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나 대리접수도 허용. **단, 대리접수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원서접수 시 확인하므로 반드시 지참하여 방문**

8.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비고
1. 응시원서 1부 및 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 : 당진시 수입증지(7,000원) ※ 당진시청 1층 민원실 22번 창구 발급 ※ 정부수입인지 불가 ※ 우편접수 시에는 수입증지 대신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대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별지 제1호 서식
2. 이력서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 중 시험관련 경력 증명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기 바라며, 첨부하지 않을 경우 불인정 처리	별지 제2호 서식
3. 자기소개서 1부	❍ 분량 : A4 용지 2매 이내	별지 제3호 서식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분량 : A4 용지 3매 이내	별지 제4호 서식
5.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 채용 관련 개인정보 제공·이용 관련 본인 동의 확인	별지 제5호 서식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직무분야, 성명, 생년월일, 접수일 작성 및 자필 서명 후 제출	별지 제6호 서식
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결격사유, 범죄경력 유무조회 관련 본인 동의 확인	별지 제7호 서식
8. 최종학교 졸업(학위) 증명서 1부	❍ 단,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도 함께 제출 ❍ 고등학교 졸업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원본(전자증명) 제출
9.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원본(전자증명) 제출

구 분	내 용	비고
10. 관련분야 실무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직책(직급)·근무부서(담당업무)·상근직 또는 비상근직 등이 명시되고, 발행기관의 발급자·연락처·관인날인 등이 명확해야 하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관련 분야 근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근무경력기준 : 1일 8시간, 주 40시간)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 요건 경력인정위의 직무내용 기재가 안 될 경우 <별지 제8호.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 서류작성 미비로 경력판정이 불분명할 경우 관련 분야 실무경력 불인정 ❍ 근무형태가 불규칙적인(시간단위 근무 등) 근무 경력자는 근무일 또는 기간 동안 1일 근무시간과 기간을 경력증명서에 명시하여 근무시간 산출이 가능하도록 제출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하지 않음 ❍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음 ❍ 학위취득 과정은 실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원본 (전자 증명) 제출
11.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 제출자의 경력확인용으로 사용(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이 불명확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보충서류 첨부	원본 (전자 증명) 제출
12.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 1부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관련분야 면허, 자격증, 논문, 수상실적 등	

◈ 각종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공고일 기준)**된 것이어야 함

◈ **원본 제출 요구 서류의 경우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팩스, 이메일 출력본 등 사본은 불인정**함

◈ **전자증명서도 원본 효력을 가지므로 원본에 갈음하여 제출 가능하나, 전자증명서의 출력물은 사본이므로 불인정**함

◈ 외국어로 된 서류는 한글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되 응시자격과 직접 관련된 증명서 등은 공증을 받아야 하며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불확실한 경우 불인정함

9. 재공고 및 변경공고

○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 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 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실시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에 당진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

10. 기타 사항

○ 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상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서류보완은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접수 기간 이후에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반환이 가능합니다.

※ 본인의 원에 의거 원본에 한하여 반환 가능하나 응시 수수료는 반환 불가

※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예외적 경우에 응시 수수료 반환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조제3항제2호에 의거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경력직 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됩니다.

❍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당진시의회(☎ 041-350-48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